

주주님께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지하 2층 강당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3. 회의 목적사항
 -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4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장홍성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진중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도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였으며, 당사 홈페이지 (<http://www.incross.com>)에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 주주님께서서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시 : 신분증
- 대리행사 시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별첨 1 : 위임장

별첨 2 :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021년 3월 10일

인크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원 ”직인생략”

■ 별첨 1

위 입 장

[대리참석용]

본인은 _____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인크로스(주) 제14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주주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보유주식수	주	의결권행사주식수	주
대리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성 명 :

(주주 인감 날인)

* 첨부 : 주주인감증명서 1부. (대리참석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크로스(주) 대표이사

귀하

■ 별첨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조 (목적)</p> <p>1. ~ 13. (생략)</p> <p>14.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p> <p>15. ~ 23. (생략)</p> <p>24. 상기 각호 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p>	<p>제2조 (목적)</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u>전자상거래 및 관련 사업</u></p> <p>15. ~ 23. (생략)</p> <p>24. <u>상품의 제작 및 발주, 수입, 수출, 판매업</u></p> <p>25. 상기 각호 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p> <p>26. 상기 각호 관련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p> <p>27. 기타 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대 되는 제반사업</p>	<p>전자상거래 관련사업에서 전자상거래 및 관련 사업 변경 및 상품의 제작 및 발주, 수입, 판매업 신설(추가) 및 번호변경</p>
<p>제 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p> <p>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p>	<p>제 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p> <p>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p> <p><u>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기업어음증권(CP), 투자계약증권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규정 정비</p>
<p>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p> <p>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p> <p><u>본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u></p>	<p>개정 상법 반영</p>
<p>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 ④(생략)</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생략)</p>	<p>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 ④(현행과 같음)</p> <p>⑤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개정 상법 반영</p>
<p>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p>	<p>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u>다만,상법 제 368조의 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u></p>	<p>개정 상법 반영</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 ~ ⑥ (생략)</p>	<p><u>원의 선임</u>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 <u>감사위원회</u> <u>위원의 해임</u>은 <u>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u> 하되, <u>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u> 하여야 한다.</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u> <u>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u>에는 <u>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u>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신설)</p>	
(신설)	<p><u>제46조의 2 (감사위원회의 분리 선임·해임)</u></p> <p>① <u>제 46조에 따라 구성하는</u> <u>감사위원회</u>의 <u>감사위원</u> 중 1명은 <u>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u> <u>감사위원회</u> <u>위원</u>이 되는 <u>이사로</u> <u>선임</u>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 분리 선임한</u> <u>감사위원회</u> <u>위원</u>을 <u>해임</u>하는 경우 <u>이사</u>와 <u>감사위원회</u> <u>위원</u>의 <u>지위</u>를 모두 상실한다.</p>	개정 상법 반영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홍성	1969. 03. 01	-	임직원	이사회
김진중	1971. 05. 15	-	임직원	이사회
정도희	1974. 09. 22	-	임직원	이사회
총 3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장홍성	<현> SK텔레콤 MNO사업부 광고/Data Co장	- SK텔레콤 광고/Data 사업단장 - SK텔레콤 IoT/Data 사업단장	-
김진중	<현> SK텔레콤 Corp2센터 Value Growth 그룹장	- SK텔레콤 Corporate Development 센터 TMT 사업개발 CoE 리더	-
정도희	<현> SK텔레콤 T3K AI Transformation Co AI Transformation Product & Biz 담당	- SK텔레콤 Data Intelligence 그룹장 - SK텔레콤 Data Analytics 그룹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장홍성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진중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도희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사내이사 장홍성, 김진중, 정도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함.